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72352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근

피고1. B 유한회사

2. 유한회사 C

변론 종결2020. 9. 23.

판결 선고2020. 11. 25.

주 문

1.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함)와 관련한 부분에 한정한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5,000,000원(= 분양대금 반환금 100,000,000원 + 위약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 통지일인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3.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피고가 약정 기일 안에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은 민원제기 및 관할 행정기관의 인, 허가절차 지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인, 허가의 지연 등'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2020. 4. 7. 서증이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의 각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위 답변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 피고가 위 답변서에 첨부한 서증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함)는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및 위약금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갑 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인감 인영의 상이함이 육안상 명확하게 확인되고, 달리 위 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서봉조

별지